

## 자기주도학습 특화프로그램

- 성북구청 · 서울정수초등학교 간 -

#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집중강화 프로젝트 업무 협약서안

성북구청장(이하, “성북구청”이라고 한다)과 서울정수초등학교장(이하,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라고 한다)은 성북구 거주 학생들의 학습동기부여, 자존감 향상 및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하여 『자기주도학습 특화프로그램 -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집중강화 프로젝트』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며,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서울정수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『자기주도학습 특화프로그램 - 찾아가는 자기주도학습 집중강화 프로젝트』(이하 “본 사업”이라고 한다)의 원활한 추진과 능률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 (사업의 범위)** 서울정수초등학교 5학년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

**제3조 (사업의 시행)** “성북구청”은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의 대상 5학년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,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한다.

**제4조 (사업의 추진)** 사업의 추진 기간은 2015년3월부터 2015년12월까지 진행하기로 하며, “성북구청”은 본 사업의 주관자로서 원활한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**제5조 (소요자원 부담)** ① “본 사업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“성북구청”이 부담한다.

**제6조 (협약의 신의성실 이행)** 협약 당사자는 “본 사업”이 학생들의 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 (협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)** ① 본 협약의 효력기간은 “본 사업”에 대한 종료일까지로 한다.  
② 협약 당사자인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는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경제적 환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
2.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가 중대한 기관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, 본 협약에서 정한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실된다.

**제8조 (개인정보보호)** ① “성북구청”은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가 제출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로 무단 사용하지 않으며 보유목적이 완료되면 개인정보파일을 즉시 삭제·파기한다.  
② “성북구청”은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적절한 보안대책 및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한다.  
③ “성북구청”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시 제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는 일방적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9조 (협약의 해석)**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가 협의하여 결정하거나, 관련법령, 조례 등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10조 (협약의 효력)** ① 본 협약은 서명 후 상호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.  
② 본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“성북구청”과 “서울정수초등학교”가 협의 및 결정에 의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3월 일

성북구청장  
김 영 배

서울정수초등학교장  
오 인 균